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519
----------	------

발의일자 : 2018. 10. 10.

발 의 자 : 동회영 의원 외 9인

1. 주 문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를 표하며, 행정안전부에 이를 철회할 것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여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로,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를 부정하여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 이다.

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 이후로 28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의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까지 무시한 개악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결의문 : “붙임”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10. .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